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00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이강일・황운하・김남희
손명수・민병덕・김문수
박홍배・강준현・김남근
이인영・박정현・이훈기
이용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계약 당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산정근거, 산정과정, 위험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4항・제5항 등).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 경우에는”을 “아니한 경우,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가맹본부가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산출근거가”를 “산출근거 및 변동요인이”로, “가맹본부의”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하고, 가맹본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맹계약을”을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계약을”로, “근거를”을 “근거·산출과정 및 주요 매출변동요인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설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가맹계약 체결일부터”를 “제공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중 늦은 날부터”로 한다.

제43조제6항제3호 중 “근거자료를 비치하지”를 “자료를 설명 또는 비치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② (생 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아니한 경우,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가맹본부가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출근거 및 변동요인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하고, 가맹본부의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	⑤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근거·산출과정 및 주요 매출변동 요인을

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공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중 늦은 날부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자료를 설명 또는 비치하지----------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아니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